

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
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인용 조례 변경사항 반영 (안 제9조의2제2호)
-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에 따라 폐기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집행기관에서는 운영비용 절감 방안과 향후 시설 노후화와 반입물량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 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